

# 대학원 식품공학과 학사 운영 내규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교과 과정 운영, 논문심사, 기타 학사 운영 전반을 규정하여 대학원 식품공학과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

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식품공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### 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

식품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식품공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# 제4조 (입학 자격)

입학 자격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5조 (입학 시험)

입학 시험에 관한 문제 출제, 점수 배정, 합격 사정, 기타 시험 운영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6조(입학 시험 과목)

시험은 기초 학력 테스트에 주안점을 둔다. 따라서 시험 과목은 대학원 공통과목(영어)이외에 전공 과목으로서 식품공학 학부과정 과목으로 정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

### 제7조 (이수 과목, 이수 학점)

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
## 제8조 (학점 제한)

학점(연구 학점 제외)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.

## 제4장 자격시험

### 제9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석사과정은 제1저자로 한국연구재단(KCI) 등재학술지 이상으로 1편, 박사과정은 제1저자로 SCI(E) 등재학술지 1편 또는 KCI 등재학술지 2편으로 한다.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을 적용한다.

### 제10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1.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가능 하도록 한다.
2.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학과 전임교원 당 1과목 출·채점을 시행하며,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.

### 제11조 (외국어시험 과목)

외국어 자격시험 과목은 영어, 한국어 2개 과목으로 시행하며,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
## 제5장 학위과정

### 제12조 (학위 과정 선택)

학위의 취득은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학위취득을 위한 방법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13조 (학위 과정의 변경)

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
##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### 제14조 (논문제출요건)

다음의 요건을 가진 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### 1. 석사과정

석사과정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이상(연구학점포함)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

### 2. 박사과정

(가) 6학기 등록을 필하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 자격시험과 종합 학력 자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

(나) 재학 기간 중 지도교수와 공동 명의로 저명한 국내,외 학술지에 2편 이상 발표하여야한다. 발표논문은 반드시 주논문과 동일분야, 동일 계통이어야 하며,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
### 3. 석박통합과정

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을 적용한다.

## 제15조 (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)

### 1. 석사과정

(가)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 심사위원회를 별첨 양식에 따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(나) 대학원에서 정한 논문심사 기일 내에, 석사과정학생의 논문심사위원 교수가 심사한다.

### 2. 박사과정

(가)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, 논문 예비 발표 및 최종 심사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 단, 최종 심사 예정 학기보다 1학기 전에 과내 전체교수가 참석한 공개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. 이 예비 발표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대학원 규정상의 예비 발표를 갈음한다.

(나) 내규 제14조 2항에 의한 외부 발표 논문들은 학회지 논문의 경우 논문 최종 심사 신청 이전까지 게재 증명서를 득 하여야 하며, 학술회의 논문은 심사 신청 이전까지 개최된 학술회의에 발표되어야 한다. 이들의 증빙 자료를 별첨 양식(외부 발표 논문 목록)과 함께 논문 심사 신청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석박통합과정

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을 적용한다.

##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

### 제16조 (의사결정 방식)

대학원 식품공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한다. 교수 회의의 의결은 비밀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, 만일 가부 동수일 경우는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.

### 제17조 (내규 개정 및 미규정 사항의 결정)

본 내규는 대학원 식품공학과 교수회의의 발의 및 검토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도 이에 준 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

- ① 본 내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1998년 3월 이후 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 박사과정은 2001년 3월부터 적용된다.
- ③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된다.
- ④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한 기준은 2020년 3월부터 적용된다.